

- 파주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-  
사업수행능력(PQ) 세부평가기준

# 파주 경제자유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
## I. 총 관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평가방법	평가기준
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		[100]		
	(1) 자격및등급	[14]	절대평가	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에 따라 평가
	(가)총괄 평가자	3		
	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	6		
	(다)분야별 평가자	5		
	(2) 환경영향평가등 경력	[17]	절대평가	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
	(가)총괄 평가자	4		
	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	7		
	(다)분야별 평가자	6		
	(3) 환경영향평가등 실적	[17]	절대평가	공고일부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
(가)총괄 평가자	4			
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	7			
(다)분야별 참여평가자	6			
(4) 업무여유도	[17]	절대평가	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 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	
(가)총괄 평가자	4			
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	7			
(다)분야별 참여평가자	6			
(5) 교육훈련	[2]	절대평가	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·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	
(6) 과업의 이해도(前次)	[1]	절대평가	전(前)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	
(7) 이적계수				
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	(1)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	[14]	절대평가	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
	(가)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	7		
	(나)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	7		
	(2) 신용도	[9]	절대평가	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
	(가)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	6		
	(나)재정상태 건실도	3		
	(3)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	[6]	절대평가	
	(가)개발실적	2		
	(나)투자실적	2		
	(다)활용실적	2		
(4) 공동도급	[1]	절대평가		
(5) 업체능력평가	[2]	상대평가		
(6) 하도급준수	감점		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	
(7) 청년고용	가점		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	

## II.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부평가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환경평가 참여 능력 평가		[100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1)자격및등급	[14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가)총괄	(3)	<p>○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5의2 및 「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·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」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)에 따라 평가한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환경영향평가사</th> <th>해당기술사</th> <th>특급평가자</th> <th>고급평가자</th> <th>중급평가자</th> <th>초급평가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괄</td> <td>100%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분야별 책임 평가자</td> <td>단순</td> <td>-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-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분야별 평가자</td> <td>단순</td> <td>-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-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</p>	구분	환경영향평가사	해당기술사	특급평가자	고급평가자	중급평가자	초급평가자	총괄	100%	-	-	-	-	-	분야별 책임 평가자	단순	-	100%	100%	90%	80%	-	복잡	-	100%	90%	80%	-	-	분야별 평가자	단순	-	100%	100%	100%	100%	90%	복잡	-	100%	100%	100%	90%	80%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환경영향평가사		해당기술사	특급평가자	고급평가자	중급평가자	초급평가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괄	100%		-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분야별 책임 평가자	단순		-	100%	100%	90%	80%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복잡		-	100%	90%	80%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분야별 평가자	단순		-	100%	100%	100%	100%	9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복잡		-	100%	100%	100%	90%	8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	(6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다)분야별 평가자	(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환경영향평가 가등 경력	[17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가)총괄	(4)	<p>○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조 제4호)과 사후환경영향조사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6조)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.</p> <p>- 환경영향평가등 : 100%</p> <p>- 기타 환경분야 : 60%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8">경력년수</th> </tr> <tr> <th>17년이상</th> <th>15년이상</th> <th>13년이상</th> <th>10년이상</th> <th>9년이상</th> <th>7년이상</th> <th>7년미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총괄</td> <td>단순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td>50%</td> <td>4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분야별 책임 평가자</td> <td>단순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td>5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분야별 평가자</td> <td>단순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경력년수								17년이상	15년이상	13년이상	10년이상	9년이상	7년이상	7년미만	총괄	단순	100%	100%	90%	80%	70%	60%	50%	복잡	100%	90%	80%	70%	60%	50%	40%	분야별 책임 평가자	단순	100%	100%	100%	90%	80%	70%	60%	복잡	100%	100%	90%	80%	70%	60%	50%	분야별 평가자	단순	100%	100%	100%	100%	100%	90%	80%	복잡	100%	100%	100%	100%	90%	80%	70%
구분	경력년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7년이상		15년이상	13년이상	10년이상	9년이상	7년이상	7년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괄	단순		100%	100%	90%	80%	70%	60%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잡		100%	90%	80%	70%	60%	50%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책임 평가자	단순		100%	100%	100%	90%	80%	70%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잡	100%	100%	90%	80%	70%	60%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평가자	단순	100%	100%	100%	100%	100%	90%	8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잡	100%	100%	100%	100%	90%	80%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	(7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다)분야별 평가자	(6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경평가 참여 능력평가	(3) 환경영향평가등 실적	[17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가)총괄 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 (다)분야별 참여평가자	4 7 6	<p>○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.</p> <p>○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-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. -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: 1.0 - 해당평가 외 : 0.6</p> <p>○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-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: 1.0 - 기타사업 : 0.6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</th> <th colspan="5">실적건수</th> </tr> <tr> <th>15건이상</th> <th>13건이상</th> <th>11건이상</th> <th>9건이상</th> <th>9건미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총괄</td> <td>단순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분야 책임평가자</td> <td>단순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분야 참여평가자</td> <td>단순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, 검토,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</p>	구분		실적건수					15건이상	13건이상	11건이상	9건이상	9건미만	총괄	단순	100%	100%	90%	80%	70%	복잡	100%	90%	80%	70%	60%	분야 책임평가자	단순	100%	100%	90%	80%	70%	복잡	100%	90%	80%	70%	60%	분야 참여평가자	단순	100%	100%	100%	100%	90%	복잡	100%	100%	100%	90%
구분		실적건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5건이상	13건이상	11건이상	9건이상	9건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괄	단순	100%	100%	90%	80%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잡	100%	90%	80%	70%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 책임평가자	단순	100%	100%	90%	80%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잡	100%	90%	80%	70%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 참여평가자	단순	100%	100%	100%	100%	9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잡	100%	100%	100%	90%	8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4) 업무여유도	[17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가)총괄 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 (다)분야별 참여평가자	4 7 6	<p>○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(공고일기준 최대 1년)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(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)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.</p> <p>○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<math display="block">\Sigma [\text{계약금액} \times (\text{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} / \text{총계약기간}) / 10\text{인}]</math>           ※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          ※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          ※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</p> <p>○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          배점 - [배점 × (1인당 중복금액 2.5억 초과금액/2.5억)]            ※ 1인당 중복금액이 5.0억 이상인 경우는 "0"점으로 평가한다.            ※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(지분을 미고려) 금액을 의미함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
1.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	(5) 교육훈련	[2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·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.</li> <li>-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: (교육이수인원/평가대상인원) × 2점</li> <li>-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: (교육이수인원/평가대상인원) × 1점</li> <li>※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, 한국환경연구원,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.)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.</li> </ul>
	(6) 과업의 이해도(前次)	[1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업의 이해도는 전(前)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.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(前)단계 용역을 포함한다.</li> <li>- 전차점수 = 배점 ×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/총평가인원수</li> <li>※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/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.</li> <li>○ <b>본 과업은 전차 사업이 없으므로 일괄 배점(1점) 적용</b></li> </ul>
	(7) 이적계수	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: 0.8</li> <li>○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: 0.9</li> <li>○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: 1.0</li> <li>※ ①회사의 부도, 파산, 해산, 양도·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, ②이적 직전(直前)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, ③이적직전(直前)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.0을 적용한다.</li> <li>※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.</li> </ul>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	(1) 환경영향평가등수행실적	[14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가) 환경영향평가등수행건수	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.</li> <li>○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: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</li> <li>-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: 1.0</li> <li>- 해당평가 외 : 0.6</li> </ul> </li> <li>○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: 1.0</li> <li>- 기타사업 : 0.6</li> </ul> </li> <li>○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(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, 금액은 합산 한다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나) 환경영향평가등수행금액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5">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유사평가실적건수</td> <td>단순</td> <td>10건이상</td> <td>8건이상</td> <td>6건이상</td> <td>4건이상</td> <td>4건미만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15건이상</td> <td>12건이상</td> <td>9건이상</td> <td>6건이상</td> <td>6건미만</td> </tr> <tr> <td>배점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유사평가실적금액</td> <td>단순</td> <td>250%이상</td> <td>200%이상</td> <td>100%이상</td> <td>50%이상</td> <td>50%미만</td> </tr> <tr> <td>복잡</td> <td>500%이상</td> <td>400%이상</td> <td>350%이상</td> <td>300%이상</td> <td>300%미만</td> </tr> <tr> <td>배점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	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					유사평가실적건수	단순	10건이상	8건이상	6건이상	4건이상	4건미만	복잡	15건이상	12건이상	9건이상	6건이상	6건미만	배점	100%	90%	80%	70%	60%	유사평가실적금액	단순	250%이상	200%이상	100%이상	50%이상	50%미만	복잡	500%이상	400%이상	350%이상	300%이상	300%미만	배점	100%	90%	80%	70%	60%
구 분		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사평가실적건수	단순	10건이상	8건이상	6건이상	4건이상	4건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잡	15건이상	12건이상	9건이상	6건이상	6건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배점	100%	90%	80%	70%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사평가실적금액	단순	250%이상	200%이상	100%이상	50%이상	50%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잡	500%이상	400%이상	350%이상	300%이상	300%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배점	100%	90%	80%	70%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 신용도	[9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가)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	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 [별표 3]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.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정지 : 0.2점/월 감점(거짓·부실작성, 복제는 제외하며,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)</li> <li>- 거짓작성 및 복제 : 4점/건 감점, 부실작성 : 2점/건 감점</li> </ul> </li> <li>○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(계약관련법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등)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(과징금 부과처분 포함),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.2점씩 감점(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																						
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	(나) 재정상태 건실도	3	<p>○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13 340 1406 674"> <tr> <td>회사채</td> <td>BBB-이상</td> <td>BBB-미만 B-이상</td> <td>CCC+이하</td> </tr> <tr> <td>기업어음</td> <td>A3-이상</td> <td>A3-미만 B-이상</td> <td>C이하</td> </tr> <tr> <td>기업신용</td> <td>BBB-이상</td> <td>BBB-미만 B-이상</td> <td>CCC+이하</td> </tr> <tr> <td>대기업/중기업</td> <td>10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소기업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/tr> </table> <p>※ 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,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,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. 다만,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“0”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</p>	회사채	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기업어음	A3-이상	A3-미만 B-이상	C이하	기업신용	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대기업/중기업	100%	80%	70%	소기업	100%	90%	80%		
	회사채	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																				
	기업어음	A3-이상	A3-미만 B-이상	C이하																					
기업신용	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																					
대기업/중기업	100%	80%	70%																						
소기업	100%	90%	80%																						
(3)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	[6]																								
	(가) 개발실적	(2)	<p>○ 산출식 = <math>\sum(\text{환경분야 건당 } 1.0 \times A \times B)</math></p> <p>※ 단,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, 이 경우 B=1.0을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등급별 가중치(A)&gt;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13 1272 1426 1384"> <tr> <td>구 분</td> <td>신기술</td> <td>특 허</td> <td>실용신안</td> <td>연구보고서*</td> </tr> <tr> <td>계 수</td> <td>1.0</td> <td>0.6</td> <td>0.3</td> <td>0.1</td> </tr> </table> <p>*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.</p> <p>*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(B)&gt;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13 1639 1426 1823"> <tr> <td>구 분</td> <td>5년미만</td> <td>5년이상 10년미만</td> <td>10년이상 20년미만</td> </tr> <tr> <td>특허</td> <td>1.0</td> <td>0.8</td> <td>0.6</td> </tr> <tr> <td>실용신안 / 연구보고서</td> <td>1.0</td> <td>0.8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 <p>※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,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.</p>	구 분	신기술	특 허	실용신안	연구보고서*	계 수	1.0	0.6	0.3	0.1	구 분	5년미만	5년이상 10년미만	10년이상 20년미만	특허	1.0	0.8	0.6	실용신안 / 연구보고서	1.0	0.8	-
구 분	신기술	특 허	실용신안	연구보고서*																					
계 수	1.0	0.6	0.3	0.1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년미만	5년이상 10년미만	10년이상 20년미만																						
특허	1.0	0.8	0.6																						
실용신안 / 연구보고서	1.0	0.8	-																						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	(나)투자실적	(2)	<p>○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(기술개발투자액/총매출액)에 따라 계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구분</td> <td>1.5% 이상</td> <td>1.5% 미만 1.2% 이상</td> <td>1.2% 미만 1.0% 이상</td> <td>1.0% 미만 0.75% 이상</td> <td>0.75% 미만 0.5% 이상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2</td> <td>1.8</td> <td>1.6</td> <td>1.4</td> <td>1.2</td> </tr> </table>	구분	1.5% 이상	1.5% 미만 1.2% 이상	1.2% 미만 1.0% 이상	1.0% 미만 0.75% 이상	0.75% 미만 0.5% 이상	점수	2	1.8	1.6	1.4	1.2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1.5% 이상	1.5% 미만 1.2% 이상	1.2% 미만 1.0% 이상	1.0% 미만 0.75% 이상	0.75% 미만 0.5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점수	2	1.8	1.6	1.4	1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다)활용실적	(2)	<p>○ 산출식 = <math>\sum(\text{환경분야 } 1.0 \times A \times B \times C)</math></p> <p>※ 단,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, 이 경우 C=1.0을 적용한다.</p> <p>(A) 신기술, 특허,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</p> <p>(B) 등급별 계수</p> <p>(C)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활용건수 및 금액(A)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활용건수 (건)</td> <td>5이상</td> <td>5미만 4이상</td> <td>4미만 3이상</td> <td>3미만 2이상</td> <td>2미만 1이상</td> </tr> <tr> <td>활용금액 (억원)</td> <td>20이상</td> <td>20미만 18이상</td> <td>18미만 16이상</td> <td>16미만 14이상</td> <td>14미만 12이상</td> </tr> <tr> <td>가중치</td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80%</td> <td>70%</td> <td>60%</td> </tr> </table> <p>※ 활용건수,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등급별계수(B)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구 분</td> <td>신기술</td> <td>특 허</td> <td>실용신안</td> </tr> <tr> <td>계 수</td> <td>1.0</td> <td>0.6</td> <td>0.3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(C)&gt;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구 분</td> <td>5년미만</td> <td>5년이상 10년미만</td> <td>10년이상 20년미만</td> </tr> <tr> <td>특허 / 실용신안</td> <td>1.0</td> <td>0.8</td> <td>0.6</td> </tr> </table> <p>※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,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 실적 인정여부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.</p> <p>※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.</p> <p>※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(2028.12.31.)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. (일괄 2점 부여)</p>	활용건수 (건)	5이상	5미만 4이상	4미만 3이상	3미만 2이상	2미만 1이상	활용금액 (억원)	20이상	20미만 18이상	18미만 16이상	16미만 14이상	14미만 12이상	가중치	100%	90%	80%	70%	60%	구 분	신기술	특 허	실용신안	계 수	1.0	0.6	0.3	구 분	5년미만	5년이상 10년미만	10년이상 20년미만	특허 / 실용신안	1.0	0.8	0.6
활용건수 (건)	5이상	5미만 4이상	4미만 3이상	3미만 2이상	2미만 1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활용금액 (억원)	20이상	20미만 18이상	18미만 16이상	16미만 14이상	14미만 12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중치	100%	90%	80%	70%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신기술	특 허	실용신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 수	1.0	0.6	0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년미만	5년이상 10년미만	10년이상 20년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허 / 실용신안	1.0	0.8	0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
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	(4) 공동도급	[1]	○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. - 제1종업체↔제2종업체 공동도급 : 0.5 - 제1종업체↔소기업(1,2종 포함) 공동도급 : 0.5 ※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,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. ※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%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(인원기준). ※ 중·소기업 구분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다.
	(5) 업체능력평가	[2]	○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평가 -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제출사 “수”, 미제출시 “가”등급 부여
	(6) 하도급 준수		○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-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3에 의한 ‘별점의 부과기준’ 에 따른다.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.
	(7) 청년고용가점		○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· 1% 이상 : 0.1점 · 2% 이상 : 0.2점 · 3% 이상 : 0.3점 ※ 신규 고용율 =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(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) /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(입찰 공고일 기준) * 소숫점 이하는 절삭 ※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(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) ※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※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(월말 기준) -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-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
		0.1	○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
		0.2	· 1% 이상 : 0.1점
		0.3	· 2% 이상 : 0.2점 · 3% 이상 : 0.3점

**【별표 1】 《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》**

구분	평가대상
유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</li> <li>-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단, 지방공단, 농공단지개발사업</li> <li>- 주택법(舊 “주택건설촉진법”)에 의한 대지조성사업</li> <li>-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(舊 “도시계획법”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, 시가지조성사업,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“토지구획정리사업법”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포함)</li> <li>-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</li> <li>-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중 단지조성사업</li> <li>-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</li> <li>- 유통단지개발촉진법”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</li> <li>-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 단지조성사업</li> <li>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</li> <li>-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</li> <li>-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중 주거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</li> <li>-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사업</li> <li>-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 정비사업</li> <li>-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</li> <li>-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</li> </ul> <p>※ 사업시행근거법률,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</p>
기타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사사업 이외의 모든사업</li> </ul>

**【별표 2】 《총괄평가자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》**

업체수	등 급					업체수	등 급				
	수	우	미	양	가		수	우	미	양	가
2,3	1	1	(1)			22	2	5	9	4	2
4	1	2	1			23	2	5	9	5	2
5	1	2	1	1		24	2	5	10	5	2
6	1	2	1	1	1	25	3	5	10	5	2
7	1	2	2	1	1	26	3	5	10	5	3
8	1	2	3	1	1	27	3	5	11	5	3
9	1	2	3	2	1	28	3	6	11	5	3
10	1	2	4	2	1	29	3	6	11	6	3
11	1	2	5	2	1	30	3	6	12	6	3
12	1	3	5	2	1	31	3	6	13	6	3
13	1	3	5	3	1	32	3	7	13	6	3
14	1	3	6	3	1	33	3	7	13	7	3
15	2	3	6	3	1	34	3	7	14	7	3
16	2	3	6	3	2	35	4	7	14	7	3
17	2	3	7	3	2	36	4	7	14	7	4
18	2	4	7	3	2	37	4	7	15	7	4
19	2	4	7	4	2	38	4	8	15	7	4
20	2	4	8	4	2	39	4	8	15	8	4
21	2	4	9	4	2	40	4	8	16	8	4

**【별표 3】 《총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》**

※ 단,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경우 제출시 “수” 등급을 부여하여 미제출시 “가” 등급 부여

구분	배점	지 표
최우수 (수)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</li> <li>■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 제시</li> </ul>
우수 (우)	1.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,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</li> <li>■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,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</li> <li>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제시</li> </ul>
보통 (미)	1.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</li> <li>■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,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</li> <li>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, 일반적인(보편적인) 범주</li> </ul>
미흡 (양)	1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■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</li> <li>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</li> </ul>
불량 (가)	1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</li> <li>■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%이상인 경우</li> <li>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부실한 답변</li> </ul>

**【별표 4】 《신용평가등급 기준》**

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기업신용평가 등급
AAA	-	AAA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)
AA+, AA0, AA-	A1	AA+, AA0, A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+, AA0, AA-에 준하는 등급)
A+	A2+	A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+에 준하는 등급)
A0	A20	A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)
A-	A2-	A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-에 준하는 등급)
BBB+	A3+	BBB+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+에 준하는 등급)
BBB0	A30	BBB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)
BBB-	A3-	B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-에 준하는 등급)
BB+, BB0	B+	BB+, BB0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+, BB0에 준하는 등급)
BB-	B0	B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-에 준하는 등급)
B+, B0, B-	B-	B+, B0, B-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+, B0, B-에 준하는 등급)
CCC 이하	C 이하	CCC+ 이하 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+에 준하는 등급)

### Ⅲ. 일반사항

1.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「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·경력 등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」(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)에 따른다.
2.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유사평가수행실적·신용도·기술개발 및 투자실적·해외평가수행실적·전차용역수행실적·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 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,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3.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,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4.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Ⅳ.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

1.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,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,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, 발주청별로 차기 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.
2.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 실적·재정상태 건설도·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.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,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【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산정방법 例】

지분율(%)		평가대상 참여기술자		비고
A사	B사	A사	B사	
70	30	5인×70%(±10%) = 3~4인	5인×30%(±10%) = 1~2인	※사사오입
60	40	5인×60%(±10%) = 3인	5인×40%(±10%) = 2인	
50	50	5인×50%(±10%) = 2~3인	5인×50%(±10%) = 2~3인	

3.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.
4.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.
  -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5.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.
6.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
  -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,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(단순사업 적용)

구 분	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
단순사업	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
복잡사업	환경영향평가(재협의 포함), 전략환경영향평가(정책계획에 한한다.)

7. 참여평가자의 구성
  - 총괄 평가자 포함 5인을 평가한다.

참여평가자 구성 : 5인

- 총괄평가자 (1인) : 환경영향평가사
- 분야별 책임평가자(2인) : 환경 분야
- 분야별 참여평가자(2인) : 환경 분야

8.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
  -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,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5]에 따른 검토·협의·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.

9. 참여평가자 실적 산정

-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5]에 따른 검토·협의·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0. 업무여유도 평가

-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(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)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.

11. 민간사업 실적 인정

-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.

12. 교육훈련 인정

-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.

가.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 
나. 국립환경인력개발원,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  
러닝교육. 다만,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 
교육시간의 80%이하인 경우에 한한다.

13. 용역 인정범위

-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.
- 舊 사전환경성검토는 포함하며,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 및 재대행 등은 제외한다.